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1. 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안 자 : 전병주 의원 외 13명

나. 의안번호 : 제1491호

다. 제출일자 : 2020. 5. 21.

라. 회부일자 : 2020. 5. 29.

2. 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안 자 : 정지권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1518호

다. 제출일자 : 2020. 5. 25.

라. 회부일자 : 2020. 5. 29.

3. 서울특별시장 제출안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1569호

다. 제출일자 : 2020. 5. 25.

라. 회부일자 : 2020. 5. 29.

II. 제안사유

1. 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안

- 최근 경사지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경사진 곳에 주·정차시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해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으나, 운전자의 실질적인 행동이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비기준으로 고임목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주차장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현행 조례에서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실태조사”로 약칭하고 있는 사항을 “안전관리실태조사”와 구분하여 “수급실태조사”로 조정하고, 수급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법상의 안전 기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법 개정 사항이 실제로 주차장 안전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반영함

2. 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안

- 자동차를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시 운전자가 습관적으로 자동차 변속레버를 P에 위치시키지 않는 행위가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사이드브레이크 또한 작동시키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탈하여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굴러 감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여 인간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임
- 2018년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서울대공원내 서울랜드 경사 주차장에서 변속레버를 주행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치 않은채 운전자가 이탈한 차량이 굴러 앞차량에서 짐을 내리던 가족을 충격을 받아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후 사고 가족의 요구사항중 하나인 파킹블럭 설치 요구에도 서울시와 서울랜드는 현수막 설치와 방송하는거 외에는 파킹블럭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울시 관할 공용주차장과 서울시 부지에 설치된 경사주차장에는 주차 블록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3. 서울특별시장 제출안

- 주차요금 결제의 편의성 및 자동차 통행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바로 녹색결제를 시영주차장에 도입함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규정과 요금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그 밖에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안

- 가. 주차장 법적 안전기준 사항 추가(안 제3조제1항제3호의 다목)
- 나. 개정 대상 조문을 어문 규범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함

2. 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안

- 가.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의 경사주차면에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고정된 고임목을 설치 하여야 하고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는 주차장 법적 안전기준 사항 추가(안 제9조의2)

3. 서울특별시장 제출안

- 가.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차량번호 인식 결제시스템, 주차요금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1호)
- 나.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단서)
- 다.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요금을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1항제13호 및 부칙 제2조)
- 라.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 마.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리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부여될 수 있는 감면 대상을 삭제함(안 제23조의2)

- 바. 여성우선주차장의 설치비율을 기계식 주차대수를 제외한 자주식 주차대수 기준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2제1항)
- 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가로를 일반형은 2.3m에서 2.5m로, 확장형은 2.5m에서 2.6m로 확장함(안 별도 제3호 서식)
- 아.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지목을 ‘주차장’으로 한정하였던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2)
- 자. 그 밖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정비함

IV. 참고사항

1. 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안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소 참조)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6. 3 ~ 6. 10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수정가결¹⁾

1) 주차계획과-7127(2020.6.6.)

- 기존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변경하고 ‘안전관리실태조사’ 신설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의 다목은 수급실태조사가 아닌 안전관리실태 조사에 관한 내용임
- 따라서 제3조제1항의 세부 항목이 아닌 별도 조항(제3조의2)으로 개정하고 국토부 시행규칙(안)에는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과 조사주기(3년) 등의 내용이 있어 조례안에도 포함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부칙에서 시행일을 ‘20.6.25로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필요

2. 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6. 3 ~ 6. 10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 원안가결²⁾

- 개정된 주차장법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에 동의함. 주차장법상 “고임목 등

2) 주차계획과-7344(2020.6.12.)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 현장여건에 따라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이동식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의 방안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설치 및 비치 부여 의무와 안내표지판을 통하여 사고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서울특별시장 제출안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 12 ~ 4. 1

○ 제출의견 : 없음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1. 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경사지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내용에 경사진 주차장과 관련한 법적안전기준 여부를 새롭게 추가하여 안전한 주차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경사진 곳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내용에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포지 등’의 주차장 법적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상주차장은 종단경사도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³⁾ 노외주차장은 원칙적으로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 밖에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 등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등⁴⁾ 주차장 이용

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4)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안전을 위한 주차장 경사도와 관련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에는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 하는 등”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된 바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서 경사진 주차장을 포함하여 주차장 실태조사 내용에 주차장의 법적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파악토록 하는 것은 관련 법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주차장 실태조사는 각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개정 사항을 실행하는 부분과 행정적 이행에 대해서는 추후 자치구와 논의도 필요하다고 할 것임
- 한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현재의 실태조사가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로 구분되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도 ‘안전관리실태조사’ 항목에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주차장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예정이라는 점에서 현행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동 개정조례안은 시행일을 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6월25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⁵⁾을 고려할 때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95회 정례회 일정: 6월30일 본회의 안건처리

2. 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시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차량 사고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 관리자에게 자동차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고임목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자동차 미끄럼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주차장 관리자로 하여금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고임목 및 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17년 경 서울랜드 동문주차장 경사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미끄럼 사고로 인해 유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주차장 안전주차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서울시도 「도로교통법」 제34조의3⁶⁾을 근거로 하여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 요청’⁷⁾을 통해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있음

6)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주차계획과-10919(2019.8.22.)

- 경사진 곳에 주차한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주차 안내(플랜카드 게시, 방송 실시 등)
- 주차장 내 보행자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개선(안전표지판 설치, 고임목 비치, 주차장 평탄화 등)

- 최근 국회에서는 주차장 설비기준과 주차장 설치·관리자 의무에 고임목, 차량 미끄럼 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새롭게 규정⁸⁾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법”)⁹⁾이 통과되어 오는 6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동 조례개정을 통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사진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미끄럼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이 주차장을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차장 미끄럼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고임목 이외에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다양한 형태¹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끄럼 방지 장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도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조제3항(주차장설비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미끄럼 방지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9) “하준이법” 관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019. 11.28.)에서 2건의 법률안을 부의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되었음

10)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4조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차된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경사진 곳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주차된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장 제출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의 결제 편의성 및 자동차 통행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전등록결제시스템인 바로녹색결제시스템¹¹⁾ 시영주차장에 도입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과 요금징수체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 행안부 등의 권고에 따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바로녹색결제시스템 도입 관련(안 제6조 및 제7조)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지갑없는 주차장 구축’¹²⁾ 차원에서 시영주차장에 도입하고 있는 ‘바로녹색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주차시간측정기기’의 정의를 ‘주차요금 결제 애플리케이션 등’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안 제6조제2항 관련)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주차장 결제 등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주차이용 편의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동 개정안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대면서비스 활성화

11) ‘사전등록결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교통정책과-29534(2018.11.21.)

- 체계적·종합적인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 통행관리를 위한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결제수단 사전등록 + 후불고지 방식 도입

- 사전등록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요금과 연계 가능한 시스템 구축

12) 지갑없는 주차장 2단계 사업 추진계획(무정차 자동결제 주차서비스 제공), 주차계획과-13833(‘19.10)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안 제7조제1항)

자동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실제 운전자가 감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취약성을 갖는 만큼 비감면 대상자가 감면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 한편 동 개정안은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100분의 1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제1항제2호, 제13호)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구축하고 있는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과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의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주차이용 편의는 증진할 수 있으나 특정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¹³⁾으로 기간을 정하여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서울시는 '19년 10월 시영주차장 8개소에 '사전등록결제시스템과 연계한 주차요금 무정차 자동결제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고, 총 105개소의 시영주차장에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을 추가로 추진 중에 있어 '20년 7월에 완료될 예정임
- 한편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입법체계상의 형식도 중요하다고 할 것으로 안 제7조제1항제2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이미 현행 조례에 해당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안 제7조1항13호은 제11조까지만 규정되어 있어 12호를 신설해야

1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바로녹색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3호로 잘못 신설한 것은 입법 절차상의 검토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조례 입안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확인해야 할 것임

■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삭제 관련(안 제8조 삭제)

- 현행 조례는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행정적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행안부 등¹⁴⁾에서 동 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함에 따라 관련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 하지만, 현행 「주차장법」 제8조의2¹⁵⁾ 및 제15조¹⁶⁾에서는 노상·노

14) 행안부 법무담당관-5219(2020.3.31.)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와 협업하여 ‘불합리한 자치 법규 정비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15)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6) 「주차장법」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외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자동차의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이 관련 법률의 근거가 없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임

■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안 제23조의2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지자체장 등에게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특권·특혜성 면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17)을 반영하는 것임

현행 조례에서는 관용차량, 관리자가 정하는 차량 등 감면과 관련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영주차장의 운영 취지에 반하고, 불필요한 특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감면 대상 차량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임

■ 여성우선주차장 관련 등(제25조의2제1항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18)에 따라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의 10%를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기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17)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3451(2019.9.24.)
- 지자체 출입 공직자등에 대한 과도한 특혜·특권성 주차 편의 제공 관행에 대한 언론 등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점검

18)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식 주차장은 구조상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기계식 주차장만 있는 주차장에서는 동 규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기계식 주차장과 노상주차장 등이 혼합된 주차장에서는 전체 주차대수에서 기계식 주차장이 제외 되는 만큼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